법관평가제도 TFT 변호사팀 보고서

2020. 9. 24.



법관평가제도 TFT 변호사팀



목 차

1. 법관평가제도 개요 1
가. 법관평가제도 도입 취지 및 시행 효과
나. 법관평가제도 시행 경과 및 주요활동 3
다. 현행 법관평가제도의 개선방향7
라. 국회 법관평가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 발의안 관련 자료 8
2. 법관평가제도 운영 현황 10
가. 현행 법관평가 절차 개관
나. 법관평가 업무 담당 기관
다. 법관평가의 방식
라. 법관평가 결과의 활용16
3. 법관평가 결과의 활용방안 17
가. 법관평가 결과 활용방안17
나. 구체적 검토사항18
(1) 법관평가 결과의 통보대상 및 인사평정 반영 범위 18
(2) 법원(평정권자)에 함께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 19
(3) 법관평가 결과 반영 범위 20
(4) 법관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불복 또는 검증절차 ······ 21
(5) 법관평가 결과의 해당 법관 전달 여부 21
(6) 평가 변호사에 대한 실명 확인 여부 22
(7) 법관평가 결과의 공개 여부 24



4. 법관평가기구 25
가. 법관평가기구의 지위 25
나. 법관의 법관평가기구 참여 25
다. 외부인사의 법관평가기구 참여 26
라. 법관평가기구의 업무 26
5. 법관평가 방식 및 내 용 ····································
가. 법관평가의 방식 27
나. 법관평가의 내용 30

1

법관평가제도 개요

가. 법관평가제도 도입 취지 및 시행 효과

□ 법관평가제도 도입 취지

- 민주사회에서의 사법권은 그 자체로 유래하는 고유권력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으로 부터 연원하는 권력임. <u>사법권의 독립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적 목적에 부합</u>해야 하므로 국민의 인권 보장에 따라 사법권의 구조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법관은 공정하게 사건당사자의 주장과 의견을 청취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
- 사법권의 책임과 관련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시행 중인 근무평정제도만으로는 국민에 게 불친절하고 고압적인 법관,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법관, 재판진행을 잘못하는 법관 등 소위 '문제 있는 법관'을 가려내고 개선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됨.
- 이에 법원의 <u>공정한 재판진행과 절차엄수</u>를 독려하고, <u>국민의 신뢰와 사법부의 권</u> <u>위를 유지</u>하며, 궁극적으로는 <u>사법관료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u>하기 위하여 법관 평가제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함.

□ 해외 도입 사례 참고

- 선진적인 사법문화의 정착을 위해, 법관평가제를 도입한 미국·일본 등의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사법현실에 맞는 법관평가 제도를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됨.
 - 미국의 경우, 법관평가에 관한 논의는 1800년대 후반 언론과 변호사회를 통해 제기되었으며, 1970년대에 이르러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법관평가기구에 의한 본격적인 법관 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함. 미국 공식기구에 의한 법관평가가 이루어지는 곳은 2006년 기준 21개 지역에 이르며, 현재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중에 있음¹⁾.
 - **일본**의 경우, 2003년 재판관평가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재판관 임용시 평가와 인사평가로 구분됨. 과거에는 고과표에 의한 조직 내의 근무평정제도만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재판관의 인사평가에 관한 규칙』과 『하급재판소 재판관지명 자문위원회 규칙』에 의거하여 법관인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음²).

¹⁾ 이상수, "사법권 독립과 법관의 직무평가", 『민주법학』제41호(2009. 11.), p13-14.

²⁾ 윤태석, "법관평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인권과 정의』 7월호(2012), p75-77 참고.



□ 법관평가제도 시행 효과3)

○ 법관의 사법서비스 품질개선

- 법관평가는 <u>법관이 준수해야 할 행동수칙을 구체적으로 제시</u>하고 <u>법관 개개인의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지적</u>해줌으로써 <u>법관이 스스로 법정운영의 품질을 제고</u>하도록 노력하는 유인을 제공함.

○ 국민 대중에 대한 교육적 효과

- 법관평가는 국민 대중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제도로서, <u>대중이 법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u>은 판결의 내용 이외의 것, 다시 말해 <u>법관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동에 한정</u>되고, 그러한 요청에 답하지 못했을 때에만 법관 개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됨.
- 이 과정에서 법관평가는 <u>대중이 자신이 법관에게 무엇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u> 지를 알게 하는 교육적 효과를 가짐.

○ 사법권 독립의 제고

- <u>중립적이고 절차지향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사의 책임성을 평가</u>하게 되면, <u>법관은 판결 상의 자율성을 더욱 확보</u>하게 됨. 즉, 객관화된 기준과 객관화된 평가절차에 의해서만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명백할 때 법관은 더욱 <u>독립적으로 공정한 재판</u>을수행할 수 있음.

○ 공정한 인사를 위한 자료의 제공

- 법관평가는 사법연수원 기수와 성적에 따른 <u>서열승진제도를 대체하는 객관적이고</u> <u>공정한 인사 자료</u>로 활용될 수 있음.

³⁾ 이상수, "사법권 독립과 법관의 직무평가", 『민주법학』제41호(2009. 11.), p27-29 참고.



나. 법관평가제도 시행 경과 및 주요활동

□ 법관평가제도 시행 경과

○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2020년 7월 현재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이하, '지방회'라고 함)가 일제히 법관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2008. 12. 15.	서울회, <u>법관평가특별위원회 발족</u>
2008. 12. 24.	서울회, <u>법관평가제도 최초 시행</u>
2009. 1. 29.	서울회, 최초 법관평가결과 대법원 제출
2009.	경남회, 법관평가제도 시행
2010. 3. 15.	서울회, 법관평가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2010.	경기북부회·부산회, 법관평가제도 시행
2012.	경기중앙회·충북회·울산회·광주회·전북회, 법관평가제도 시행
2013.	대전회·대구회, 법관평가제도 시행
2015.	제주회, 법관평가제도 시행
2016.	인천회·강원회, 법관평가제도 시행 (전국 14개 지방회 모두 참여)
2017. 4. 25.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법관평가표 통일안 마련 및 평가참여 독려 건> 제출 및 논의
2017. 6. 9.	법관평가표 전국 통일안4) 채택
2017. 8. 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8. 9. 3.	각 지방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과의 법관평가제도 발전을 위 한 간담회
2020. 6.	대한변협 법관평가특별위원회, 법원행정처와 협의 진행

^{4) 8}번, 10번 문항 제외



□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요 활동

○ 2008. 사법사상 최초로 법관평가제 시행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회)는 2008. <u>공정하고도 적정한 법관평가를 통한 사법</u> 풍토 개선 취지에서 사법사상 최초로 법관평가제를 실시하였음⁵⁾

<사법사상 최초로 '법관평가제'를 시행하면서>

2008. 12. 24.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20여 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법정에서 판사가 변호사를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해도 변호사들이 말 한마디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것은 사법의 민주화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품위 없는 재판, 불공정한 재판이 방치되어 왔던 것은 법관의 독립이라는 명분 앞에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압적 자세로 인격을 모독하는 재판, 자의적으로 전횡하는 불공정한 재판은 법관의 독립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한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을 중심으로 법관을 서열화하여 승진을 결정하는 현재의 사법시스템은 법관의사기를 떨어뜨리고 재판을 주재하는 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법관평가제'는 이미 일본, 대만,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그에 걸맞은 능력과 인품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민주적 사법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사법의 한 축을 담당한 변호사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에 집중되어 있는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서열 중심의 법관 인사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할 것입니다. 나아가 평가자료가 축적되면 장차 대법관 후보에 대한 적정성 자료로도 활용될 것입니다.

신뢰받는 사법부는, 사건당사자는 물론 대리인으로부터도 존중받을 때에만 가능 합니다. 저는 '법 관평가제'를 2년 간 준비하여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로 시행하면서 이 제도야말로 우리의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열린 사법부로 만들고, 우리의 재판을 품위 있고 공정한 재판으로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이 제도의 성공은 회원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가 성공의 절대 관건입니다. 여러분의 재판경험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정하고도 적정한 법관평가는 우리의 사법 풍토를 바꾸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2008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하는 법관평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하 창 우

⁵⁾ https://www.seoulbar.or.kr/cop/bbs/selectBoardList.do?nttld=4198&bbsId=BBSMSTR_000000000022#LINK



○ 2009. 법관평가 상시 시행

서울회는 2009. 회원의 법관평가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u>법관평가</u> 표 연중 상시 접수를 시작하였음6).

<2009년 법관평가 상시 시행 안내>

2009. 4. 6.

우리 회는 작년 연말에 시행한 법관평가의 결과를 2009. 1. 29. 대법원에 전달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법관평가를 상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께서는 진행하고 있는 재판에 대하여, 첨부해 드리는 법관평가표를 작성하시어 동봉해 드린 회신용 봉투를 이용, 사무국(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8-1 변호사회관 3층 법제팀 ☎ 3476-0982)으로 우송해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봉투에 밀봉한 후 우편 또는 인편으로 보내주셔야합니다.

특히 우리 회는 회원 여러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익명성 문제를 철저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즉 평가자의 실명부분은 절취되어 따로 보관하기 때문에, 절취 이후에는 누가 어떤 평가를 하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가자의 실명부분은 철저히 비공개로 보관하게 되므로 실명이 공개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법관평가표는 연중 상시 접수하며, 다만 그 결과는 1년분을 취합하여 내년초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법관평가를 해 주신 회원에게는 법관평가표 최초 작성시 1건에 1시간, 추가 작성할 경우 1건당 30분의 공익활동시간을 인정해 드립니다.

○ 2009. "회원 1인당 법관평가표 1장씩 제출하기"캠페인 개최

서울회는 2009. 회원의 법관평가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u>"회원 1인당 법관평가</u> 표 1장씩 제출하기"캠페인을 개최하여 참여를 적극 독려하였음.

○ 2010. "법관평가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서울회는 2010. 3. 15. <u>법관평가제도가 갖는 의미</u>를 살펴보는 한편, <u>외국과 우리의</u> <u>법관평가제도를 비교·분석</u>하고, 법관평가제가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 보기 위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음. 이에, **변호사**, **법관**, 기자 등 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

⁶⁾ https://www.seoulbar.or.kr/cop/bbs/selectBoardList.do?nttId=4407&bbsId=BBSMSTR_000000000022



고, 법관평가가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법관의 재판과정 자체의 공정성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을 더욱 굳건히 하는 제도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 2013. 온라인 법관평가 시작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회원이 법관평가표를 작성 후 반드시 우송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하여 회원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회원이 직접 바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법관평가 On-Line"홈페이지를 개설하였음?》.

<이제 온라인으로 법관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2013. 9. 10.

우리 회가 2008년부터 실시한 법관평가제가 올해로 여섯 해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고압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을 개선하여 우리 사법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법관평가표를 작성 후 반드시 우송하여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법관평가제도 정착 및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회는 위와 같은 불편함을 없애고, 많은 회원들의 참여로 법관평가제도의 공정성을 높이 기 위해 국내 최초로 우리 회 홈페이지에서 회원이 직접 바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법관평가 On-Line"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 "법관평가On-Line"홈페이지는 법관평가의 전제인 "평가자 비공개"의 원칙에 따라 평가자가 누구인지 관리자도 확인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는 등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 제작하였으므로 안심하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위치한 법관평가 배너를 클릭하신 후 안내된 법관평가표 작성방법에 따라 온라인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온라인 법관평가표 작성 후 임시저장이 가능하고, 최종제출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회가 발송하는 모든 안내 메일 하단에는 법관평가표 작성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배너를 넣어 접근성을 최대한 높일 예정이며, 기존에 실시했던 우편접수도 병행하여 실시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울러 회원께서 작성해 주시는 법관평가표는 우리 회 공익활동규정에 의거하여, 제출하신 1건마다 1시간의 공익활동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⁷⁾ https://www.seoulbar.or.kr/cop/bbs/selectBoardList.do?nttId=10291&bbsId=BBSMSTR_000000000022



다. 현행 법관평가제도의 개선방향

□ 통일적 운영 기준의 필요성

- 법관평가제도가 10년 가까이 시행되어 오면서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가고 있고 평가 항목이 비교적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나, 아직 <u>몇 가지 평가 항목에 관하여 각 지방회 별 상이한 내용이 존재</u>하고, <u>운영 방식 또한 부분적으로 상이한 측면</u>이 있음. 따라서 법원평가표의 평가항목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의 전달방법 및 전달시기 등 <u>객관적이고 통일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함.</u> 이에 대해 <u>대한변협과 지방회 간 논</u>의가 진행중임.

□ 평가결과의 법관 인사 반영을 통한 실효성 확보

- 법관평가제 도입 이후 재판장의 고압적 태도나 폭언, 모욕적 언사 등이 줄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인사에 반영되지 않는 평가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존재함.
- 법관평가결과의 순방향과 사법부의 개혁의지, 변호사회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평가제도의 실질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형태로 세부 평가기준 및 운영 방안 등을 재정비한 후 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함.



라. 국회 법관평가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 발의안 관련 자료

□ 19대 국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4. 9. 5.)

○ 주요내용

-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평정을 함에 있어 <u>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 등 대</u> 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외부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어 **평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44조의2제3항 후단 신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 요지⁸⁾

-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근무평정의 주체는 여전히 대법원장이며 외부 기관은 평정의 주체가 아니므로 외부 기관이 판사에 대한 근무평정 결과를 직접 좌우할 수는 없음. 또한, 개정안은 외부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어 평정에 참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외부 기관의 의견을 평정에 반영할지 여부를 대법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음. 그러므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외부 기관의 의견을 근무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만으로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그리고 설령 불리한 처분을 받은 일방당사자 측 변호사가 사건 담당 판사에 대하여 편파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하더라도, 유리한 처분을 받은 타방당사자 측 변호사는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진행을 한 것에 만족하여 긍정적 평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개인이 아닌 변호사단체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불공정하여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는 적다고 할 수 있음.
- 결국 개정안은 <u>사법부에 대한 외부의 비판과 감시 수단을 확보</u>함으로써 <u>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사법서비스의 품질을 개선</u>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취** 지는 타당하다고 봄.
- 다만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 등 <u>특정 단체의 의견만을 평정에 참고할 수 있</u> 도록 하는 것은 의사 왜곡의 우려 및 편중된 의견 반영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신중 한 검토가 필요하며, 대법원장이 판사에 대한 평정을 함에 있어 소송당사자·소송대 리인 등 **외부의 의견을** 들어 **평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8) 19}대 국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1911641) 법사위 검토보고서



□ 20대 국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7. 8. 9.)

○ 주요내용

- <u>법관인사위원회의 법관 인사에 관한 심의 및 대법원장의 법관 연임·보직·전보 등</u> 인사관리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안 제25조의 2 제6항, 제44조의 2 제3항)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 요지⁹⁾

- 법관의 주된 업무인 재판정에서의 업무수행과 판결문의 공평.타당성을 가장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이므로, 변호사의 법관평가 결과를인사에 반영할 경우 법관의 재판 업무의 개선, 사법권 독립의 제고 및 공정한 인사를 위한 자료의 제공 등이 가능함.
- 다만, 변호사회의 법관평가결과는 회원인 변호사의 법관에 대한 평가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서 재판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변호사가 주체가 되어 객관적이고 공정한자료로 보기 어렵고, 회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대표성이낮으며, 유효한 평가를 받은 법관이 전체 법관의 일부에 불과하여 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경우 평가를 받지 아니한 법관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관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① 독립적인 평가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방안, ② 설문조사 표본을 특정 집단으로 편중시키지 아니하고 다양화하는 방안, ③ 법관평가결과 공개 전에 해당 법관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결과 및 의의

- 최종적으로 위 법안들은 <u>19대, 20대 국회 임기만료폐기</u> 되었으나,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사법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u>외부평가 도입의 필요성</u>에 <u>공감대를 형성</u>하는 계기를 제공함.

^{9) 20}대 국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08456) 법사위 검토보고서



법관평가제도 운영 현황

가. 현행 법관평가 절차 개관

2

- 현재 법관평가는 <u>각 지방회가 주관</u>하고 있으며, <u>각 지방회 소속 변호사가 평가 연도</u> <u>동안 자신이 수행한 사건을 담당한 법관에 대해 평가표를 작성하여 지방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u>각 지방회는 소속 변호사가 제출한 법관평가표를 취합하여 집계·분석한 후 그 평가결과를 공개</u>하는 방법으로 법관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한변협은 각 지방회의 법관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이를 종합·분석하고 있음.</u>
 - 대한변협은 구체적인 <u>법관평가의 방식</u>(평가표 문항, 배점, 평가 등급, 평가표 작성 방법 등)에 대하여「법관평가의 방법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고 함)으로 정하고 있음. 각 지방회는 지방회별 별도 내부 규정에 따라 법관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u>일부 평가표 문항을 제외하고는 대한변협이 정한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법관평가 방식</u>을 취하고 있음. 평가결과의 공개 범위 및 공개 절차에 관하여도 대한변협이 지침으로 정하고 있으며, <u>각 지방회는 자체적으로 그 지침을 정하거나 대한변협 지침에 준하여 공개 범위 및 절차를 결정</u>하고 있음.
 - 대한변협은 지방회가 연합하여 설립한 단체로서(변호사법 제79조), 대한변협과 지방회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관계라는 연혁적 기원이 있기에, 그동안 법관평가에 있어서도 대한변협이 각 지방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왔음. 향후 법관평가 결과가 법관인사에 반영될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할 것인바, 대한변협과 각 지방회는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통해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하고있음. 앞으로 법관평가가 법관인사에 반영되는 경우 각 지방회도 법관평가의 통일적 시행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됨. 대한변협은 법관평가와 관련한 장기적인 데이터 축적을 위하여 '법관평가 백서' 발간 등을 통해 각 지방회에서 수행한 법관평가 결과를 하나로 취합하여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나. 법관평가 업무 담당 기관

- 현재 <u>대한변협</u>과 각 <u>지방회</u>는 법관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u>'법관평가특별</u>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각 지방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는 ① <u>법관평가업무의 방향설정 및 계획수립</u>, ② <u>법관평가의 실시, 평가자료 취합 및 분석</u>, ③ <u>공정하고 객관적인 법관평가 방법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u>, ④ <u>법관평가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한 조사·연구</u>, ⑤ <u>법관평가제도의 홍보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조사·연구</u>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대한변협 법관평가특별위원회는 위 각 지방회 법관특별위원회와 같은 업무 외에도, <u>각 지방변호사회에 설치된 법관평가위원회와의 역할 분담 및 조정, 각 지방변호사</u> 회의 법관평가자료 취합 및 분석 등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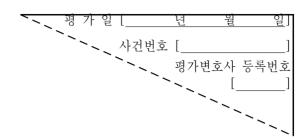
다. 법관평가의 방식

- (1) 법관평가표의 양식(평가 문항, 배점, 등급 등 관련)
- 법관평가표는 <u>공정(30점)</u>, 품위·친절(20점), 신속·적정(20점), 직무능력·직무성실(30점) 4개의 항목, 10개의 평가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가 등급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의 5개 등급으로 나뉘어 있음. 평가표에는 <u>평가 대상인 법관에 대한 정보 및 평가자인 변호사에 대한 정보</u>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u>사건번호</u>를 필수적으로 입력하도록 하여 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사건에 대하여만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 대한변협이 정하고 있는 법관평가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법관평가의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법관평가표

	법 원	
평가대상	재판부	
	판사명	



항목	문 항			평 가		
	① 소송관계인 일방을 편들거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내지 않았다.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공정 (30)	② 조정, 화해, 자백, 합의 등을 사실상 강요하거나 이에 불응하면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③ 증거신청을 부당하게 배척하거나, 증인신문시 불필요하게 시간 또 는 문항을 제한하거나 질문을 제지하지 않았다.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H 품위· 친 절	④ 반말이나 반말 투의 말, 고의적이거나 모욕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 았다.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0)	⑤ 소송관계인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고 언행에 품위가 있었다.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신 속 ·	⑥ 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하고, 불필요한 기일 연기를 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적 정 (20)	⑦ 개정시간이나 고지된 재판시각을 준수하고, 소송관계인이 부당하 게 오랜 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주지 않았다.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직 무 능 력	⑧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재판에 임하여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으며, 재판의 진행이나 변론 종결에 있어 졸속진행이나 지연이 없었다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직 무	⑨ 소송법상의 절차를 준수하고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시하였다.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성 실 (30)	① 재판의 진행 과정 혹은 결론의 도출과정이 원활하고 논리적이어 서 설득력이 있다(재판이 판결 혹은 ADR로 종결되었든, 혹은 현 재 진행 중이든 관계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구체적 사 례						
기 타 의 견						
평 가 구 분	○ 각 문항 당 평가는 '매우우수(10점)·우수(8점)·보통(6점)·미흡(4점)· ○ "매우미흡"으로 평가하는 경우 가급적 구체적 사유 기재요망. ○ 구체적 사례 및 기타 의견 작성 시 별지 기재 첨부 가능.	매우미	흡(2점)	'등 5기	개로 평	가



○ 2017. 전국지방회장협의회에서 법관평가표 전국 통일안이 채택되어 <u>각 지방회의 평</u> <u>가표가 위 대한변협 지침과 같은 내용으로 통일</u>되어 시행되고 있음. 이에 모든 지방회가 대한변협 지침과 같이 4개의 항목, 10개의 평가문항을 채택하고 있으며, 평가 등급도 5개 등급으로 운영하고 있음. 다만, <u>평가문항의 구체적인 문구에 대해서는 지방회가 일부 수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u> 하였으므로, 현재 2개의 문항에서 <u>일</u> 부 지방회가 다소 다른 문구를 택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8번 문항

대한변협, 그 외 지방회	인천회	강원회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재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재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재
판에 임하여 실질적인 심리가 이	판에 임하여 실질적인 심리가 이	판에 임하여 실질적인 심리가 이
루어지도록 노력하 였으며, 재판의	루어지도록 노력 <u>하여,</u> 재판의 진	루어지도록 노력 하여, 재판의 진
진행이나 변론 종결 <u>에 있어</u> 졸속	행이나 변론 종결 <u>이</u> 졸속 <u>진행이나</u>	행이나 변론 종결 <u>이</u> 졸속 <u>하거나</u>
<u>진행이나</u> 지연 <u>이 없었다.</u>	지연 <u>이 없었다.</u>	지연 되지 않는다 .

- 10번 문항

대한변협, 그 외 지방회	서울회	강원회	광주회
재판의 진행 과정 혹은	판결문(이유가 기재된 결	판결문이 논리적이고 충	재판의 진행 과정 혹은 결
결론의 도출과정이 원활	정문 포함)이 논리적이고	분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	론의 도출과정이 원활하고
하고 논리적이어서 설득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고	<u>다.</u> ¹¹⁾	논리적이어서 설득력이 있
력이 있다(재판이 판결	<u>있다.10)</u>		다(재판이 판결 혹은 재판
혹은 <u>ADR</u> 로 종결되었든,			이 판결 혹은 <u>대안적인 분</u>
혹은 현재 진행 중이든			<u>쟁해결</u> 로 종결되었든, 혹
관계 없이 답변하여 주시			은 현재 진행 중이든 관계
기 바랍니다).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0) 10}번 문항에 대하여, 서울회를 제외한 지방회의 경우 재판이 종결되었든 진행중이든 관계 없이 답변하도록 하고 있지만, 서울회의 경우 판결문(재판 결과)에 대하여만 답변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재판이 종결되지 않아 평가자가 해당 문항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항목의 평균 점수를 해당 문항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전체 평가표 중 종국 전 단계에서 제출되는 평가표(재판결과에 대한 항목만을 미답변한 평가표)의 비율은 1만6 천건 중 480여건 정도에 해당함.

^{11) 10}번 문항에 대하여 서울회와 유사한 문구를 채택하고 있으나, 대한변협 지침과 같은 취지로 재판 종결 단계 및 진행단계를 구별하지 않고 평가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2) 법관평가표 작성방법

○ 대한변협은 다음과 같이 법관평가표 작성방법을 정하고 있음(법관평가의 방법 및 평 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2]).

법관평가표 작성방법

- 1. 20__.(전년도) 12. 1.부터 20__.(당해 연도) 11. 30.까지(이하 '평가 연도') 회원께서 수행한 사건(수임년도와 무관)을 재판한 전국의 모든 법관에 대하여 평가해 주십시오.
- 2. 법관평가표 상단 우측에 <u>평가변호사 등록번호, 사건번호, 평가일</u>을 기재하여 주십시오(평가자 의 등록번호와 사건번호는 철저히 비공개됩니다).
- 3. 동일한 법관이 재판한 복수의 수임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u>대표적인 사건번호 1개</u>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4. 법관평가표 상단 좌측의 평가대상(법원, 재판부, 법관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5. 법관평가표 1장에는 법관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하여 주십시오. 복수의 법관을 평가하시는 경우에는 각각의 법관평가표에 평가하여 주십시오.
- 6. 같은 법무법인 소속인 다수의 회원이 한 사건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회원만 해당사건의 법관에 대해 평가하여 주십시오.
- 7. 법관평가표는 5개의 평가항목과 10개 세부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문항 '평가'란에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2)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해 주십시오. 반드시 10개 세부문항을 모두 평가해야 하며, 1개 항목이라도 평가가 누락될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 8. 법관평가표 하단의 '구체적 사례'란에는 평가 항목(공정, 품위·친절, 직무능력 등)에서 '매우우수' 평가 또는 '매우 미흡' 평가를 줄 만한 사례가 있었던 경우 그 일시·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고, '기타의견'란에는 담당하지 않은 사건이나 평가 연도 이전에 수행하신 사건을 재판한 법관에 대한 평가의견 등을 기재하셔도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해 주십시오.
- 9. 법관평가를 해 주신 회원께는 제출 1건당 1시간의 공익활동을 인정해 주고 있는 바, 동명이 인인 경우 식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10. 작성하신 법관평가표를 지방변호사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u>평가 변호사의 등록번호 및 사건번호를 반드시 기재</u>하게 하여 변호사가 <u>실제로 수행</u> 한 사건에 한해서만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u>평가 변호사의 정보는 철저히 비공개</u>하여, 변호사가 위축되지 않고 법관 평가의 취지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하고 있음(위 작성방법 2.항 관련).



- <u>동일한 법관이 재판한 복수의 수임사건</u>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건번호 1개**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u>같은 법무법인 소속인 다수의 변호사가 한 사건을 공동으로</u> 수행한 경우에는 <u>그 중 1인의 변호사만 해당사건의 법관에 대해 평가</u>하도록 하여 <u>평</u> <u>가 결과의 왜곡을 방지</u>하고 있음(위 작성방법 3.항 관련).¹²)
- '기타의견'란에는 평가 변호사가 담당하지 않은 사건이나 평가 연도 이전에 수행한 사건을 재판한 법관에 대한 평가의견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위 작성방법 8.항 관련), 참고적 의견 수집 차원에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며, 담당하지 않은 사건의 법관에 대한 의견은 우수·하위법관을 선정하는 법관평가통계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음.
- 평가표는 평가 변호사가 소속된 지방회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 만일 변호사가 소속 지방회 권역 외의 법원의 사건을 수행한 경우, 평가표를 해당 법원 소재지 지역의 지방회에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지방회가 있는 반면, 소속 지방회에서 일단 취합한 후 평가표를 법원 소재지 지역의 지방회에 송부하는 지방회도 있고, 권역 외 지역 법관에 대한 평가일지라도 이를 직접 법원행정처에 전달하는 경우도 있음.
- 이외의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u>각 지방회 간 다소 차이</u>가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¹³⁾ **대부분 협회의 지침과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음.

(3) 전자적 방식의 법관평가 시행 여부

○ 현재 전국 14개 지방회 중 8개 지방회는 전자적 방식(온라인으로 회원이 직접 페이지에 접속하여 평가하는 방식)의 법관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직 오프라인 방식을

¹²⁾ 서울회의 경우, <u>법관명과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수작업으로 중복평가를 거르고 있음.</u> ① 동일한 회원이 동일한 사건번호로 동일한 법관을 평가한 경우, 최초 접수 1건 외에는 반영하지 않고, ② 동일한 회원이 다른 사건번호로 동일한 법관을 평가한 경우, 최초 접수 1건 외에는 반영하지 않으며, ③ 동일 사무소 소속 회원이 동일한 사건번호로 동일한 법관을 평가한 경우, 최초 접수 1건 외에는 반영하지 않음.

¹³⁾ 예컨대, 일부 항목의 평가가 누락될 경우 평가표 전체를 무효처리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누락된 항목에 대해 나머지 항목의 점수를 평균하여 부여하는 경우도 있음(위 작성방법 7.항 관련).



이용하고 있는 지방회 중에서도 온라인 평가 도입을 적극 고려 중인 곳이 있음.

라. 법관평가 결과의 활용

(1) 우수·하위법관 선정

○ 대한변협이 정하고 있는 우수·하위법관 선정 방식은 다음과 같음(지침 제2조).

제2조(정의) ① '우수법관'이라 함은 평가기준연도에 회원들로부터 10회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중 상위 10% 이내 인원에 포함된 법관을 말한다.

- ② '하위법관'이라 함은 평가기준연도에 회원들로부터 10회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중 하위 10%이내 인원에 포함되고 법관평가 점수가 평균점수에 현저히 미달한 법관을 말한다.
- ③ '우수법관', '하위법관'의 선정 기준은 <u>각 지방변호사회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u>
- <u>우수·하위법관 선정 기준은 각 지방회가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u>, 대부분의 지방 회가 <u>적어도 5건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을 대상</u>으로 하고 있음.
- 2017~2019년도 우수법관과 하위법관 선정 기준 건수는 다음 표와 같음(단위: 건).

서울	경기 북부	인천	경기 중앙	강원	충북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우수]5 [하위]10	선정 안함	[우수]3 [하위]5	[17년] 5 [18년] 10 [19년] 7	5	청주15 충주7 제천5 영동5	10	[17년] 5 [18년] 10 [19년] 10		10	[우수]10 [하위] 선정안함	[우수] 본원15 지원10 [하위] 15	10	[17년]30 [18년]20 [19년] 평가안함

(2) 법관평가 결과의 공개

○ 각 지방회는 내부 규정에 따라 <u>법원행정처장</u>, 대법원장, 관할법원장 등에게 **지방회** 의 법관평가 결과를 송부하고 있음. 법관평가의 언론 공개와 관련하여서도 각 지방 회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지방회 상임이사회나 법관평가특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오수법관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우수·하위법관의 사례를 공개하고 있음.



3

법관평가 결과의 활용방안

가. 법관평가 결과 활용방안

▶법관팀 의견: ① 법관 개인의 자기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자는 방안(1안), ② 평정권자의 재량으로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방안(2안), ③ 평정권자가 의무적으로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방안(3안), ④ 근무평정 외 연임심사에 반영하는 방안(4안)

▶변호사팀 의견: 근무평정 필수적 반영(3안)

- 우리나라의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판사평정에는 근무성적 평정 외에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의 자질평정이 명문으로 포함됨. 그 중 특히 친절성은 평정권자가 종 전과 같이 사무실에서 혼자의 정보접근만으로는 매우 어려워 법원 외부의 시각에 의한 평가로 그 정보제공의 범위가 확대되어야만 가능함¹⁴⁾.
- 법관 평가는 사법부 자체의 향상을 도모하고 사법부 전반의 사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며 <u>법관을 선출하거나 재신임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 정보에 근</u> <u>거한 결정을 내리는데 적합한 자료</u>로서, 법관 개인의 자기개선을 위한 자료 이상의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음.
- **1안(자기개선 자료)**의 경우, <u>법관의 자기개선을 위한 자료 활용은 해당 법관 개인의</u> 선택에 달린 문제로서 구태여 법관평가를 제도화할 필요성과 연결되지 않음.
- 2만(임의적 반영)의 경우 <u>평정권자의 재량에 의해 그 반영여부가 불확실</u>하며, 평가 제도의 도입취지가 퇴색될 수 있음. 따라서 의무 반영 범위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3만(필수적 반영)이 바람직함.
- **4안(연임평정)**은 근무평정이 누적된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u>연임평정에 별도로 법관</u> 평가가 반영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봄.
- 한편 법관팀은 평가자의 실제 사건 관여 여부 확인문제, 각 지방회 별 평가제도 운영 기준 통일문제 등이 전제되지 않았고, 5인 이상의 유효평가를 받은 법관이 전체의 절 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필수적 반영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량적

¹⁴⁾ 윤태석, "법관평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인권과 정의』 7월호(2012), p78.



반영(2안)'을 검토해줄 것을 제안함.

○ 이에 변호사팀은 인사권자의 재량적 반영(2안)은 반영여부의 불확실성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다는 점에서 필수적 반영(3안)의 입장을 유지하되, 다만 <u>평정항목 중</u> 법관평가를 별도의 독립항목으로 편성하는 것을 일정기간(5개년) 후의 목표로 명문화하고, 해당 기간 동안에는 법관평가 결과를 성실성 등 기존 법관 근무평정 항목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절충안을 검토하기로 함.

나. 구체적 검토사항

(1) 법관평가 결과의 통보대상 및 인사평정 반영 범위

▶법관팀 제시(안)

- 1) 결과 통보대상: ① 우수법관 및 하위법관만 통보를 하는 안, ② 1명이라도 평가를 받은 법관 전부에 대해 통보를 하는 안 ③ 일정 유효 평가수(예: 5인)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에 대해 통보를 하는 안 ④ 심각한 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방안
- 2) 인사평정 반영 범위: ① 우수법관 및 하위법관만 반영, ② 하위법관만 반영, ③ 일정 유효 평가수(예: 5인)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에게 반영 (이 경우, 일정 유효 평가수 미만의 평가를 받은 법관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 ▶ 변호사팀 의견: <u>일정 유효 평가수(5인)를 충족한 법관에 대하여</u> 해당 평가결과를 근무평정 권자에게 <u>통보</u>하고 이를 <u>인사평정에 반영</u>. 단, <u>5회 미만의 평가를 받은 법관의 경우에는</u> 전체 평가결과의 평균 점수를 적용
- 평정권자가 극단적 사례에 치우침이 없이 <u>다수의 데이터를 근거로 평정</u>에 임할 수 있 도록, 일정 유효 평가 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에 대해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효 평가 수를 5인으로 설정한 것은 시행 초기 법원의 공식적인 협조 부재, 변호사 1인당 평균 수임사건 수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2018년도 기준 서울회 변호사 1인의 월 평균 수임건수 '1.2건')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의 다년 간 운영 경험을 근거로 결과의 왜곡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지켜온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유의미한 가치가



있음. 향후 법관평가 제도화에 따라 <u>참여율이 제고</u>되는 경우에는 <u>유효평가기준의</u> 변경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법관 근무평정도 재판에 관여한 법관과 그렇지 않은 법관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평정기준이 다르지 않은 것처럼, 5인 이상의 법관평가를 받은 법 관과 그렇지 않은 법관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u>5회 미만의 평가를 받</u> 은 법관에 대해서는 전체 법관평가 결과상 "평균" 정도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법관팀은 <u>5인 이상의 유효평가를 받은 법관이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u> 상황에서 5인 이상의 유효평가를 기준으로 전체 법관에게 평가결과를 직·간접적으로 의무반영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 (또한 유효평가 기준을 2-3인으로 낮추는 방안은 형평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님) 이에, <u>우수·하위법관을 대상으로(혹은, 하위법관만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의 통보대상 및 인사평정 반영 범위를 축소</u>하는 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함.
- 이에 변호사팀은 현재 <u>하위법관이나 우수법관은 전체 평가법관 중 극소수</u>에 불과하여 이를 위한 법관평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봄. 또한 법관평가가 <u>근무평정에 필수적으로 반영된다는 정책목표가 설정</u>된다면 법관평가 <u>참여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변호사단체가 강구할 수 있는 동기부여</u>가 될 것이므로, 현재 실태만 가지고지적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함.

(2) 법원(평정권자)에 함께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

- ▶법관팀 의견: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의 수, 전체 평가표의 수, 일정 유효수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의 수, 평균 점수 등 각종 통계자료의 제공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항목별 평균점수, 우수법관 및 하위법관 선정의 구체적 기준 및 사례, 법관평가위원회의 구성원 등)
- ▶ 변호사팀 의견: <u>법관평가자료를 일괄적으로 평정권자에게 전달함.</u> (법원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의 수, 전체 평가표의 수, 일정 유효 수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의 수, 평균 점수 등 <u>각종 통계자료를 제공)</u>



- 대한변협과 법원이 장기적인 협업 하에 <u>연속적인 법관평가 데이터를 축적</u>하고 이를 <u>효과</u> 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관평가자료를 일괄적으로 평정권자에게 전달함.
 - 법원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의 수, 전체 평가표의 수, 일정 유효 수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의 수, 평균 점수 등 **각종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3) 법관평가 결과 반영 범위

▶법관팀 의견: 평정권자가 의무적으로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경우(3안)에는, 위에서와 같은 반 영방식 및 내용 등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할 범위가 문제됨

▶변호사팀 의견: 전체 법관 대상 근무평정 항목에 변호사의 법관평가 항목을 추가 신설

- <u>사법서비스 전반의 질적 향상</u>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체 법관**에 대한 <u>근무평정 항목</u> <u>에 변호사의 법관평가 항목을 추가 신설하고, 이를 의무 반영</u>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별도의 법관평가 항목을 추가 신설하는 경우, 개별 법관의 점수 외에도 전체 평균 및 서술형으로 구체화된 사례들을 함께 기재하여 평가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한편 법관팀은 '별도의 법관평가 항목을 추가 신설하는 대신, 성실성 등 기존 평가항 목에 참고자료로서 활용하는 방안(재량적 반영 방안과 유사)'을 제안함.
- 이에 변호사팀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필수적 반영(3안)의 입장을 유지하되, 평정항목 중 법관평가를 별도의 독립항목으로 편성하는 것을 일정기간(5개년) 후의 목표로 명문화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법관평가 결과를 성실성 등 기존 법관 근무평정 항목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또한 이 경우 i) <u>구체적인 평정표 양식 등의 제공이 가능한지</u>, ii) <u>일정기간 동안 법관평가 결과를 기존 법관 근무평정 항목에 필수적으로 포함한다면 그 구체적인</u> 형태가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한 법관팀의 의견을 요청함.



(4) 법관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불복 또는 검증절차

▶법관팀 요청: ① 법관평가 결과 하위법관으로 선정되어 그 결과가 근무평정에 반영되는 경우 이의·불복의 '주체'는 개별법관, '상대방'은 평정권자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

② 현행「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제9, 10조에 따르면 평정결과의 고지 및 이의는 일정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바,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의 이의·불복절차를 위와 동일한 요건 하에 인정할 것인지, 완화된 요건 하에 인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와 방식을 취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의견

▶변호사팀 의견: 이의절차는 법관인사평정제도 전반에 대한 이의절차 정비 시 반영 가능

○ 법관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절차는 <u>법관근무평정 전반에 대한 이의불복 제도의 설계</u> <u>과정에서 함께 고려</u>해야 할 사항으로, 현재 단계에서 <u>법관평가에 대해서만 별도로</u> <u>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u>.

(5) 법관평가 결과의 해당 법관 전달 여부

- ▶법관팀 요청: ① 이의·불복절차를 현행 제도와 동일한 요건 하에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관에게 평가결과를 전달할 필요성은 없고, 다만 <u>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u>하는 경우 <u>법관평가</u> 결과를 별도로 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
- ② 이의·불복절차를 현행 제도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인정하는 경우, 법관평가 결과가 근무평정에 반영될 경우에 이를 별도로 알려 줄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

▶변호사팀 의견: 이의절차는 법관인사평정제도 전반에 대한 이의절차 정비 시 반영 가능

- 법관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절차 및 그와 관련된 평가 결과의 해당 법관 전달 여부는 <u>법관근무평정 전반에 대한 이의불복 제도의 설계과정에서 함께 고려</u>해야 할 사항으로, 현재 단계에서 법관평가에 대해서만 별도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 다만, 평가결과가 근무평정에 반영될 경우, <u>개별 법관에 대한 평가결과 전달은 불필요</u> 함. <u>평가결과가 근무평정 중에 포함되므로 근무평정과 마찬가지로 처리</u>하면 될 것임.



(6) 평가 변호사에 대한 실명 확인 여부

▶법관팀 제안: ① 법관평가 결과를 인사자료에 반영하는 경우 위와 같은 이의·불복절차 등을 위해서라도 <u>평가 변호사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지(실</u>제 소송수행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도 포함)에 대한 의견 요청,

② 현재와 같이 '변호사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계속하여 그 자료를 보관하는 방안 또는 '실명'을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인지(해당 법관에게는 평가 변호사의 실명을 알리지 아니하는 등의 조건 하에서 실명 기재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 요청

▶ 변호사팀 의견:

- 1)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원칙적으로 평가 변호사의 실명 확인은 허용될 수 없음.
- 2) 법원이 대리인(변호인)이 선임된 모든 사건 중 변론이나 공판에 관여한 대리인(변호인)의 명단을 변호사단체와 공유하고 이를 일일이 검증하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법관평가의 사용 용도와는 무관하게, 법관평가제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자들의 <u>익명성을 반드시 보장</u>해야 함. **법관평가의 신뢰성**은 평가자들이 <u>보</u> <u>복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평가</u>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달려있음. 따라서 평가 변호사의 실명 확인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음.
- 경유증표에 의한 실제 소송수행여부 확인 방식의 대안으로 법원의 소송관여 변호사명단 제공 및 개별 대조작업을 고려할 수 있음. 즉, <u>법원이 대리인(변호인)이 선임된모든 사건 중 변론이나 공판에 관여한 대리인(변호인)의 명단을 변호사단체와 공유하고 이를 일일이 검증</u>하는 것으로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변호사들의 양심을 신뢰하고 **현재**와 같이 평가자의 익명성을 보호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법관팀은,

i) 소위 '검증절차(해당 법관에게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사실 등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평정권자에게 법관평가 결과 등을 통보하며 다만 평정권자가 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는 절차)'로서 <u>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의 법관평가 결과에 대하여 평정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경우</u> 등은 <u>해당 법관이 평가 변호사의 실명을 알 수는 없으므로</u>, 위와 같은 절차에 한하여 <u>실명 확인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u>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ii) 또한 실제 소송수행여부 확인 방식의 대안으로 법원이 대리인(변호인) 명단을 제공하는 것이 <u>현행 시스템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며</u>, 시스템 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평가의 주체가 변호사단체이기 때문에 이를 <u>법원이 먼저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u>이 있고, <u>개인정보보호법 위배 소지가 있음을 지적함.</u>

○ 이에 변호사팀은,

- i) 평정권자가 평가자의 실명을 확인함으로써 <u>익명성 보장에 대한 제도적 신뢰가 무너지는 경우 평가자의 참여가 필연적으로 위축</u>되고 제도의 취지 또한 크게 퇴색될 것이므로 '검증절차'의 도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힘.
- ii) 법원에서 재판관여 변호사 명단을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평가자와 명단을 전체로 대조하여 틀린 경우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함. (법원이 평가위원회에 참여한다면 시스템의 관리실태도 지속적 확인 가능할 것임)
- iii) 법원에서 사건에 관여한 변호사를 변론조서(공판조서)에 등재하는 등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사건번호와 대리인 명단을 추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현행 법원 시스템상의 전산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구체적인이유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법원과 변호사단체가 실무적으로 협력하는 과정이 필요함. 이와 같은 대안적 검토 없이 곧바로 '평가자의 익명성 보장'이라는 제도의 본질을 희생시켜서는 안 될 것임.
- iv) 또한, 법관평가 결과의 법관인사 반영을 입법화하면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평가자의 사건수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이 변협에 송부하도 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면 개인정보 수집의 법률적 근거가 확보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하 생략)



(7) 법관평가 결과의 공개 여부

▶법관팀 의견: ① 사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의·불복절차 또는 검증절차를 위하여 <u>평가결</u> 과 자료를 보관할 필요성(보관의 주체, 보관 자료의 범위, 보관기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에 대한 의견 요청,

② 법관평가 결과를 인사자료에 반영하는 경우에도 현행과 같은 공개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지 여부(법관평가가 법관인사에 반영될 경우에는 법관평가 결과는 다른 인사자료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분에 대하여)에 대한 의견 요청

▶변호사팀 의견:

- 1) 평가 변호사 실명유출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안의 전제 하에, 보관 필요성 검토 가능
- **2) 공개제도:** ① **우수법관 공개(하위법관 미공개)**, ② **익명 처리된 사례**에 한하여 현행과 같이 언론 공개
- 평가 변호사의 실명유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법원측에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가 가능할 것임.
- 한편, 법관평가 결과를 인사자료에 반영하는 경우에도, <u>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u>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u>평가 제도의 취지를 적극 홍보</u>하기 위하여 **우수법관 에 대한 발표**는 <u>각 지방회에서 진행</u>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이 경우 <u>우수법관</u> 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에 대해서는 <u>현행대로 비공개</u> 유지)
- 한편 법관팀은 평가결과가 인사평정에 반영되는 경우, 언론에는 비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함.
- 이에 변호사팀은 i) <u>국민의 알 권리</u> 측면에서 <u>대중이 법관에게 무엇을 정당하게</u> <u>요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확인하는 교육적 목적 달성</u>을 위해 평가 결과는 언론에 공개되어야 하고, ii) <u>하위법관 사례의 경우 익명 처리를 필수화하므로 해당 법관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u>는 점을 강조함.



4

법관평가기구

가. 법관평가기구의 지위

- ▶법관팀 의견: 법관평가기구를, 1) 변호사 단체에 두는 방안, 2) 법원에 두는 방안, 3) 변호사 단체나 법원이 아닌 외부에 독립적으로 두는 방안 등
- ▶변호사팀 의견: <u>법관평가를 담당하는 평가기구는 대한변협에</u> 두되, <u>평가결과의 반영 범위에</u> 대하여는 법원과 대한변협 간 의견교환이 필요할 것임.

나. 법관의 법관평가기구 참여

- ▶ 법관팀 의견: 비록 법관은 피평가자의 입장에 있으나 재판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법 관평가의 방식이나 내용, 기준, 결과 분석 등에 법관의 참여가 보장된다면 법관평가의 공정 성, 객관성에 대한 법관들의 우려가 줄어들 수 있음
- ▶ 변호사팀 의견: <u>법관의 참여를 배제할 이유 없으나, 평가기구의 위상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u> **있는 문제**이므로, 추후 논의가 필요함
- 현재 대한변협과 각 지방회의 <u>법관평가특별위원회에 법관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으</u> 나, 대한변협 법관평가특별위원회 규정상 <u>법관이 법관평가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것</u> 이 불가능하지는 않음. 대한변협 법관평가특별위원회의 위원은 <u>회원(변호사) 중에서</u>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u>필요한 경우 법조계, 학계, 유관</u> 기관 등의 외부인사와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 기 때문임(대한변협 법관평가특별위원회 규정 제3조 제2항).
- 법관의 참여 자체를 배제할 이유는 없으나, 법관의 참여비율, 선정방법, 참여 범위 (평가 과정에서 평가자의 실명 정보 등에 대한 접근가능성 문제) 등은 평가기구의 위상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문제임. 법관이 참여하게 된다면 평가자의 익명 성 보장을 위해 평가자의 실명 자료 등 민감 사안 검토 시 일시적으로 이석하는 등의 조치도 검토해 볼 수 있음.



다. 외부인사의 법관평가기구 참여

- ▶법관팀 의견: 법관평가의 공정성 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자인 변호사와 피평가자인 법 관 외에 제3자에 해당하는 학계, 사회단체 등 외부인사의 참여가 바람직함.
- ▶ 변호사팀 의견: <u>외부 인사 참여를 배제할 이유 없으나, 평가기구의 위상에 따라 달리 정해질</u> 수 있는 문제이므로, 추후 논의가 필요함
- 대한변협 법관특별위원회 규칙상 <u>외부인사도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참여가 가능함.</u> 현재 대한변협 법관특별위원회는 전원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한변협 검사평 가특별위원회의 경우 형사법 교수 등도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회의 경우 법관평가 특별위원회 구성원으로 외부인사가 참여 중인 곳도 있음¹⁵).
- 참여하는 외부인사 선정 시 **대한변협, 법원행정처, 기타 사회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선정방법, 참여비율 등**은 평가기구의 위상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문제여서 추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보임.

라. 법관평가기구의 업무

- ▶ 법관팀 의견: 법관평가가 법관의 인사에 반영되는 경우 현재의 업무 이외에 평가 자료 수집 후 결과 분석 및 인사 반영 범위 결정 등에 대해서도 다룰 필요가 있음. 또한 법관평가에 대한 이의에 따른 실질적인 재심사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음
- ▶ 변호사팀 의견: <u>법관평가의 결과 분석이나 근무평정 반영범위 결정</u>에 관하여 <u>대한변협과 법</u> 원행정처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함. 법관평가에 대한 이의에 따른 실질적 인 재심사 문제는 현행 법관근무평정 제도의 변화 시에 함께 고려할 사항임.

¹⁵⁾ 일부 지방회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언론인이 1~2인 참여하고 있음



5

법관평가 방식 및 내용

가. 법관평가의 방식

- (1) 재판에서 일방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법관평가 적절성
 - ▶법관팀 의견: 재판결과의 유·불리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 변호사팀 의견: 법관평가는 <u>특정 변호사 개인이 아니라 이들의 평가를 종합한 전체의 결과</u> 이므로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불공정할 우려는 적음. 실제 평가결과를 보면 패소 측 변호사 가 우수한 평가를 한 사례도 다수 발견됨.
- (2)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
 - ▶ 법관팀 의견: 평가자가 실제로 해당 사건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법관평가 유효성의 전제조건 이므로,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변호사가 법관평가표를 제출할 경우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변호사팀 의견:

- 1) 모든 지방회가 평가 시 사건번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실제 관여사건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음.
- 2) <u>법원의 시스템을 통한 담당 변호사 확인이 가장 정확한 방법</u>일 것이나, 이것이 불가능하다 면 현재의 방식이 최선이라고 할 것임.
- 모든 지방회가 평가 시 사건번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u>해당 사</u> 건 비경험자의 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함.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변호사가 자신에게 미칠 징계 가능성을 모두 감수하고 사건번호를 임의로 작출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평가표를 제출하는 것은 확률이 극히 희박한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사례임.
-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사건 수행 시 법무법인의 명의로 경유증표를 구입하므로, <u>각 지방회에서는 경유증표 확인을 통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명은 알 수 있지만 담</u> <u>당 변호사명까지는 확인이 불가능</u>함(담당 변호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역시 파악이 불가능함). 이 부분은 <u>법원의 시스템을 통해 변론이나 공판에 관여한 변호사를 파악</u> 하는 방법이 정확하지만 이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각 지방회가 취하고 있는 '사건번



호 기재' 방식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됨.

○ 추후 평가결과가 의무적으로 법관 인사에 반영된다면, <u>법원이 대리인(변호인)이 선</u> 임된 모든 사건 중 변론이나 공판에 관여한 대리인(변호인)의 명단을 변호사단체와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사건번호, 법관명, 변호사명' 등이 법관평가 사이트 로그인 시 기본 사항으로 제시되도록 하는 등의 방법).

(3) 법관평가에 대한 낮은 참여율로 인한 신뢰성 문제

▶**법관팀 의견**: 낮은 참여율로 인한 평가결과의 신뢰성, 대표성 문제가 있음.

▶변호사팀 의견: 1) 송무에 참여하는 변호사만을 모집단으로 한 실질 참여율은 비교적 높음.
 2) 추후 전국적으로 전자적 방식의 평가를 도입하면 참여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임.

○ 변호사 중에서도 <u>실제로 송무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있는 반면, 자문 만을 맡고 있</u> 어 송무에 참여하지 않는 자도 상당수임. 이에, 송무에 참여하는 변호사만을 대상으로 한 실질 참여율은 더 높다고 볼 수 있음. 2019년도 기준, 송무에 참여한 변호사들만을 모집단으로 한 법관평가 참여 비율은 다음과 같음¹⁶⁾

충북회	대전회	부산회	울산회	광주회	전북회	제주회
74.7%	40.6%	61%	60%	43.5%	53.7%	약60%

○ 변호사단체는 법관평가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유인책을 시행하고 있음. 현재 모든 지방회가 법관평가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법관평가시 회원에게 공익활동시간을 인정하고 있음. 또한, 일부 지방회는 회원 포인트(유료 교육이나 기념품 구입에 사용 가능)나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메일, 전화, 지역 내소모임 등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거나, 법관평가제도 관련 설명회나 캠페인도 개최하고 있음.

¹⁶⁾ 다만, 각 지방회가 전체 변호사 중 송무에 참여한 변호사만을 정확히 추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바, 모집단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곤란한 지방회의 경우 정확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어 기재하지 않았음.



○ 추후 전국적으로 전자적 방식의 평가(PC 및 휴대전화를 사용한 온라인 평가)를 도입하여 평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전자적 방식의 평가가 전국에 도입될 경우 법관평가 참여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4) 중복평가 방지시스템의 존부

- ▶법관팀 의견: 중복평가의 기준 및 중복평가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 ▶변호사팀 의견: 중복평가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법관평가시 평가 변호사에게 이를 안내하고 있음.
- 동일 법관의 동일 사건은 당연히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으며, 동일한 법관이 재판한 복수의 수임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건번호 1개만 기재하도록 평가자에게 안내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무법인 소속인 다수의 변호사가 한 사건을 공동으로 수 행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변호사만 해당사건의 법관에 대해 평가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17) 특히 서울회의 경우, 법관명과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수작업으로 중복평가를 거르고 있는데, 위와 같은 중복평가 기준에 위반되어 걸러지는 경우는 극히 미미한 수준임.

(5) 해당 사건이 종국되기 전의 평가표 제출 적절성

- ▶법관팀 의견: 해당 사건이 종국되기 전의 평가표 제출의 적절성에 의문이 있음.
- ▶ 변호사팀 의견: 법관평가는 소송진행 전반에 관한 평가이므로 소송종결 후에만 평가하도록 해야 할 이유가 없음.
- 법관평가는 <u>소송진행 전반에 관한 평가이므로 소송종결 후에만 평가하도록 해야 할</u> 이유가 없음.¹⁸⁾

¹⁷⁾ 이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 p.14의 2.다.(2) '법관평가표 작성방법' 3항, 6항 참조

¹⁸⁾ 법관평가표 10번 문항에 대하여, 서울회를 제외한 지방회의 경우 재판이 종결되었든 진행 중이든 관계없이 답변하도록 하고 있지만, 서울회의 경우 판결문(재판 결과)에 대하여만 답변하도록 하고 있음[이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 pp.11~13의 2.다.(1) '법관평가표의 양식'참조].



○ <u>법관에게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u>이 있을 수 있으나, <u>법관평가를 할 때마다</u>
<u>그 결과가 해당 법관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닌 이상 해당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려움</u>.
법관평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법관에는 압력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이는
<u>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전장치의 하나</u>로 평가하여야 할 문제임.

나. 법관평가의 내용

(1) 항목별 점수화 평가 방식 관련

- ▶법관팀 질의: 법관평가를 현재의 5단계(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에서 3단계(우수, 보통, 미흡)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 변호사팀 의견: 현재, <u>3단계 평가보다 5단계 평가가 보다 정확한 평가에 근접한다는 변호사</u> <u>들의 의견</u>을 좇아 5단계 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평가 결과를 근무평정에서 3단계에 포섭하여 반영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5단계 평가 자체를 고쳐야 할 합리적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소관 위원회에서 장기 검토 과제로 검토 가능한 사항임.
- ▶법관팀 질의: 점수화가 아닌 서술식 평가에 대한 의견(일본의 재임용 평가 참고)
- ▶ 변호사팀 의견: 법관평가를 재임용자료가 아닌 <u>근무평정 자료</u>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상 <u>서술식 평가가 주된 방식이 될 수는 없음</u>. <u>지금도 구체적 사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u> <u>고</u>, 평가결과 발표 시에 <u>해당 사례들을 취합 정리하여 발표</u>하고 있음.

(2) 재판유형별 법관평가표의 구분 여부

- ▶ 법관팀 질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 항목 중 '직무능력'과 관련된 문항은 민사와 형사로 구분하여 항목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
- ▶ 변호사팀 의견: 민사와 형사 별로 평가항목이 달라진다면 구분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으나, 현재 평가 항목상 양자를 구분할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명확하지 아니함. 법원에서 구체적 필요성이나 방안을 제시한다면 향후 구성될 평가기구에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을 것임.



(3) 법관평가표의 개별 문항에 대한 검토

- ▶법관팀 질의: 법관의 인사 이동에 따라 법관평가 대상 사건의 증거신청 채부 등에 관여한 법관과 종국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달라지는 경우 법관평가는 증거신청 채부 등에 관여한 법관과 종국판결에 관여한 법관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함(통상은 평가 연도 당시에 종국 판결에 관여한 법관에 대해 법관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나 평가 연도 이전의 증거신청 채부 등에 관여한 법관에 대해서 평가표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법관평가표의 '기타의견'란에 기재하고, 이에 관한 내용을 법관평가표 별지의 '법관평가표 작성방법'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성에 관한 의견)
- ▶ 변호사팀 의견: 법관평가는 <u>사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법관에 대한 평가</u>이기 때문에 하나 의 사건에서 <u>재판 중간에 증거채부에 관여한 법관</u>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이후 **판결 선고에 관여한 다른 법관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¹⁹⁾
- ▶ 법관팀 질의: 현행 항목이나 문항 수의 조정 및 배점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 ▶ 변호사팀 의견: 법관평가가 법제화되어 법원과의 공식적 협의를 담당할 기구가 마련된다면 해당 기구에서 검토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임.
- ▶ 법관팀 질의: 앞서 본 법관 설문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문항의 내용이나 표현 등의 수정 검토에 대한 의견('사실상의 강요', '모욕', '졸속진행' 등의 표현 검토)
- ▶ 변호사팀 의견: <u>법관평가가 법제화되어 법원과의 공식적 협의를 담당할 기구가 마련된다면</u> <u>해당 기구에서 검토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항</u>이라고 할 것임. 다만 해당 표현은 변호사들이 법관으로부터 받은 인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일정 부분 법관들이 이해하고 수인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봄.
- ▶법관팀 질의: 가치상충 응답(항목의 어느 부분에 대한 응답이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항목에 대한 응답과 반대로 나타나는 응답, 문항 ③, ④) 및 현행 무응답 처리방식(일부 항목에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평가표 제출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중간값을 부여하고 있음)의 경우 평가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
- ▶ 변호사팀 의견: 법관평가가 법제화되어 법원과의 공식적 협의를 담당할 기구가 마련된다면 해당 기구에서 검토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임.

¹⁹⁾ 해당 사건에 관여한 법관이 2인 이상일 경우 각각 평가하더라도 중복평가로 인정하여 거르지 않고 모두 인정하고 있음(서울회의 경우).